

분야별 소위원회·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

영상물등급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·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8년 3월 16일

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

1. 모집분야: 분야별 상세한 업무내용은 [붙임1] 참고

모집분야	인원	근무지	위촉기간
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	○명	부산	위촉일로부터 1년
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	○명		
광고물소위원회 위원	○명	서울	
공연추천소위원회 위원	○명	부산	
영화 전문위원	○명		
비디오물 전문위원	○명		
사후관리위원회 위원	○명		

※ 소위원회·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**모든 회의는 부산 소재 위원회 청사에서 진행**. 단, **광고물소위원회 회의는 서울 소재 위원회 교육지원 및 회의시설에서 진행**

【위원회 청사】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, 3층

【위원회 교육지원 및 회의시설】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11호

2. 지원자격

가. 소위원회(영화·비디오물·광고물·공연추천) 위원 및 전문위원

-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등급분류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
 - 영상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 - 교육·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 - 언론·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 - 청소년·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
 -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,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
-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가능함

나. 사후관리위원회 위원

- **비영리 민간단체에서만 추천이 가능**하며, 추천가능 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
 -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인 단체
 - 최근 5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
 - 영상물, 공연물 등에 대한 모니터 업무를 5년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
 - 기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

※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시 유의사항 ※

- 분야별 소위원회·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. 단, **단체별 추천인수는 1인 이내**
-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분야별 소위원회·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업무, 회의 개최횟수 및 소요시간 등을 참고하여,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격인사를 추천하여야 함
- 분야별 소위원회·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**공문으로 추천**하여야 함. 추천 시 **[붙임4] 단체 소개서** 서식에 단체 일반사항과 주요사업실적 등을 기재하여, 이를 지원자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함

3. 결격사유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
 - 「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」 제6조(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 - 공무원(「교육공무원법」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)
 - 「정당법」에 의한 당원
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
 - 개인 업무로 인해 등급분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 -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

4.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

가. 모집기간: **2018.03.19.(월) 09:00 ~ 2018.03.29.(목) 18:00**

※ 18:00 이전 도착까지 접수 유효함

나. 접수방법: **E-mail(jobk mrb@k mrb.or.kr) 접수**

※ 접수 시 한글 파일로 제출

※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
5.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
지원 시 *붙임 양식으로 작성, 별지사용 가능	1. 필수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[붙임2] 위원 이력카드* ▪ [붙임3] 자기소개서* ▪ [붙임5]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* ▪ 최종 학력증명서 1부 ▪ 경력증명서(위원 이력카드에 기재된 각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) 1부 2. 해당자에 한함(기관·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[붙임4] 단체소개서* ▪ 기관·단체장의 추천서 1부
위촉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본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신원조회용) 각 1부 ▪ 주민등록증사본, 통장사본 각 1부 ▪ 반명함판 사진(300*400픽셀)

- ※ 학력·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위·변조할 경우 위원 위촉 취소 가능함
 ※ 서류접수 마감 후 개별적으로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요청이 있을 예정임

6. 위촉절차

- **(위촉방법)** 분야별 소위원회·전문위원 및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은 **제출 서류에 대한 소정의 검증**을 거쳐 선정 및 위촉 예정
- **(위원예우)** 위원 위촉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내에서 참석수당 지급
- **(위촉공고)** 위촉 대상자 명단은 **2018년 4월말~5월초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** 예정. 위촉에서 제외된 지원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
- **(위 촉 후)** 위촉 대상자에 한해 **2회에 걸쳐 위원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진행** 예정(위촉 대상자 전원 오리엔테이션 의무 참석)
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서류는 요청 시 반환 가능합니다.